

강의평가 규정

제정 2017. 08. 28

제1조(목적) 강의평가의 목적은 전공 및 교양 수업에 대해 설문평가방법을 통해 수업내용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교원들에게는 강의 방법 및 강의내용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개정 2020. 3. 16.)

제2조(평가방법 및 시기) ① 강의평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매 학기 중간 1회(개강 후 8주 내), 매 학기 종강 후 1회 씩 총 2회 실시한다. 단, 종강 후 평가는 성적열람 기간 이전에 실시한다.(개정 2018. 2. 1., 2021. 3. 1.)

②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실시 전 강의평가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학부에 개설한 정규 학위과정 강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3. 16., 2021. 3. 1.)

1. 사회봉사, 현장실습, 임상실습 등 강의 없이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강좌
2. 팀티칭강좌 등 다수의 교수자로 이루어지는 강좌
3. 계절학기 개설강좌
4. 수강인원 1명 이하 강좌
5. 대학생활 설계와 비전 1,2
6. 기타 교무처장이 평가 제외로 인정한 강좌

제4조(평가문항) 강의평가문항은 강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평가점수) ① 강의평가문항 중 객관식 문항의 점수는 7점 척도로 계량화하며 문항별, 과목별, 교수자별 점수를 산정한다.

② 강의 평가(삭제) 중 주관식 (삭제) 문항의 경우, 평가의 내용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9. 3. 1.)

제6조(강의평가 결과의 공개) ① 강의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16.)

1.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개설된 전체 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2. 학장은 소속 학부, 학과, 전공에 개설된 전체 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3. 학과장, 전공운영위원은 소속 학과, 전공에 개설된 전체 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 할 수 있다.
4. 강의 개선의 목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교원에게 공개한다.
5. 기타 교무처장이 평가결과를 승인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한다.(개정 2018. 2. 1)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은 강의평가 결과 및 강의자가진단 결과를 차기 수업에 반영하여 수업개선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강의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 중 교수학습요인에 대한 결과를 교원업적의 교육영역 평가에 반영한다. 이때 업적점수 산정은 교무처에서 정한 보정점수를 활용한다.

③ 강의평가 결과 기준 점수(80점) 미달인 전임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프로그램(교수실무역량 촉진 프로그램, 마이크로티칭 및 교수법컨설팅)에 참여해야 하며, 미 이행시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 불가, 연구년 기회 제한 및 교내연구비 수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

2019. 3. 1., 2020.08.12., 2021. 3. 1.)

1. 강의평가 점수가 한 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전임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1개의 교수실무역량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1개의 교수실무역량 촉진 프로그램 및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강의평가 점수가 연속 2회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전임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하며,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법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강의평가 결과 기준 점수(80점) 미달 비전임 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실무역량 촉진 프로그램 참여 등 교무처가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강의평가 점수가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비전임 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8.12.)

⑤ 강의평가 결과 기준 점수(80점) 미달 강사는 교육혁신처(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실무역량 촉진 프로그램 참여 등 교무처가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강의평가 결과는 교육환경의 개선, 학업성취도의 향상, 우수강의 교강사 표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2. 1)

⑦ 교수자는 중간강의 평가결과를 강의개선에 활용하고 매학기 말 강의개선 계획서에 반영한다.(신설 2018. 2. 1)

⑧ 강의평가 중 주관식 문항 결과에 대한 처리는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9. 3. 1)

[전문개정 2020. 3. 16.]

제7조의 2(강의평가개선위원회)

① 강의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 등을 위하여 강의평가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3. 16.)

② 위원회는 교무부처장, 단과대부학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이상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신설 2020. 3. 16., 개정 2020. 9. 8., 2021. 3.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학사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④ 강의평가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개정 2020. 3. 16.)

1. 강의개선계획서, 리뷰보드를 통한 학과교육개선보고서의 결과분석
2. 강의평가 지표 및 문항 개선
3. 기타 강의평가개선 관련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 2. 1]

[제목변경 2020. 3. 16.]

제8조(비밀유지) 강의평가 업무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7. 8. 28)

1. (시행)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

1.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1.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

-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